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설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according to th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박남권^{1*} · 함승희²Nam-Kwun Park^{1*}, Seung-Hee Ham²¹Legislative Researcher, Public Safety &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eoul, Republic of Korea²Head Researcher, Urban Safety&Securit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Seou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Nam-Kwun Park, park9616@naver.com

ABSTRACT

Purpose and Method: Financial field among the various changes due to th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is the main point and to stably settle according to the purpose, improvement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facts and related acts. **Results:** To use the fire fighting project budget entirely in fire fire fighting project by the purpose of the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dual budgeting standard for labor cost should be revised. In the reserve cost budgeting standard “Within 1/100 of the total budget rule” total budget includes the labor cost, as a result reserve cost budget will keep increase, so reserve cost budget should be fixed by the project budget instead of the total budget. **Conclusion:** To use the fire fighting budget by the purpose of the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improvement on budgeting standard is necessary to increase quality of the fire service and stably operate the fire fighting organization.

Keywords: Nationalization of Fire Officials, Fire Finance,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요약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Received | 26 February, 2021

Revised | 24 May, 2021

Accepted | 4 June, 2021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최근의 재난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복합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그 피해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이 소방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소방조직은 운영과 대응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Park, 2020).

특히 그 동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시도 단위의 대형재난에 대한 현장대응체계, 대응 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역별 소방력과 소방재원의 불균형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계각층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대논리에 의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쉽지 않았다(Ahn, 2019).

그러나 모든 국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염원을 통해 지난 2020년 4월 1일자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에 발맞추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루어지면서 신분, 인사, 지휘, 소방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Chun, 2019).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의 다양한 변화 중에 재정 분야에 대한 주목을 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예산 현황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 과정 및 현황

소방공무원 신분은 정부수립(1948년)이후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하게 되면서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신분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후 1975년 서울과 부산에서 자치소방 도입이 시작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이원화된 신분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대형화·복잡화 되는 재난을 겪으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과 인명구조의 중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이원화된 체계의 한계성으로 인해 재난대응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장비 및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도 지역별로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Ryu et al., 2015).

사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라는 과제는 지난 10여년 이상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사리 전환되지 못하였다.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19.10월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2020.4.1.일자로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의 지휘·감독권이 강화되고 소방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증액과 소방재정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nges on the act to nationalize the fire fighting officials (Kim, 2020, Revised)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신분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인사	국가직(대통령, 소방청장), 지방직(시도지사)	대통령, 소방청장(시도지사 일부 위임)
	지휘	소방기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소방기본법에 명문화하여 지휘감독 강화 소방청장이 지휘·감독하는 대형재난 등 기준 지침 마련
	소방특별회계	시도별 상이한 조례 운용	법률에 근거한 특별회계 운용
재정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와 정책사업비에 대한 구분이 없었음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에 사용토록 함
	소방안전교부세	개별소비세의 20% (사업비만 사용)	개별소비세의 45% (사업비+인건비로 확대)
	복지	기존 병원 등 활용	기존 병원 활용,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운용

특별회계 운용의 필요성과 소방특별회계 설치 배경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특정 사업의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명확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해져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특정사업과 관련해 명확한 성과를 나타내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회계나 기금을 운용하기도 하며 그 근거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특별회계는 ①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②특정한 기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③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전체 재정구조는 복잡해지며 일부 유사한 사업이 여러 회계에서 운영되기도 하고, 회계 간 전출입의 규모가 커져 사업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에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특별회계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Song, 2016).

‘소방특별회계’의 경우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기존과 같이 시도 소속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이던 소방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항목이 상이한 문제, 지역별 소방재정 및 소방서비스의 편차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코자 하는 목적으로 2019.12.10.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소방회계법’이란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2021년 회계연도부터 운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일부의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소방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1.02.05.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재정규모 및 현황

그 동안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¹⁾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서울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2015.10.8.시행)를 제정하였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운용해 왔다.

이후 「소방회계법」이 제정되고 2021.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됨에 따라 서울시는 2021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신설된 「소방회계법」의 취지에 맞춰 기존에 운영 중이던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총 편성규모 8,767억 7백만 원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Fire Safety Special Account」 revenue-expenditure status (2021 Budgeting)

○ 세입 : 876,7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	보전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303,414 (34.6%)	27,305 (3.1%)	537,731 (61.3%)	3,534 (0.4%)	2,022 (0.2%)	2,701 (0.3%)
○ 세출 : 876,7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인건비	정책사업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654,862 (74.7%)	191,013 (21.8%)	26,775 (3.1%)	642 (0.1%)	3,415 (0.4%)	

세부적으로, Fig. 1을 보면 세출항목을 명목상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분류한 후 ‘정책사업비계정’에 지역자원시설세(303,414백만원)의 70%이상(242,168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인건비계정’의 부족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편성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재원에 대한 사용범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조례와 이미 수립된 2021 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과도 별다른 충돌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Table 3의 서울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세입현황과 Table 4의 소방안전교부세 현황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6년부터 ‘21년까지 최종 세입액은 연평균 2,783억 64백만 원(5.8%)이 증가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평균 307억 원 정도가 서울에 교부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생략)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부액 중 75%는 소방분야에 교부되고 나머지 25%는 소방이외의 재난 등 안전 분야에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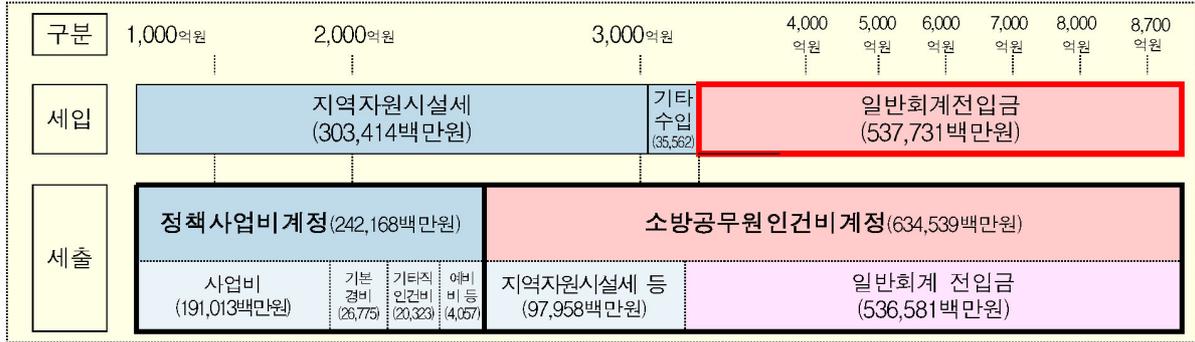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the fire safety special accounting for fiscal year 2021

Table 3. Seoul Local Resource Facility Tax Revenue Status(2016~2020)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 최종 세입액	278,364	251,675	258,631	275,625	297,549	308,339
증감율	5.8%	7.9%	2.8%	6.6%	8.0%	3.6%

Table 4. Seoul fire safety issuance tax status(2016~2021)

(단위: 백만원)

연도	평균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증감율)	471,949 (20.8%)	414,700	458,815 (10.6%)	417,260 (△9.1%)	383,834 (△8.0%)	685,134 (78.5%)	903,865 (31.9%)
서울	30,753 (7.1%)	29,249	33,133 (13.3%)	38,957 (17.6%)	27,055 (△30.6%)	25,370 (△6.2%)	35,899 (41.5%)
소방인건비 교부액	※ 소방인건비 교부액은 전국 소방공무원 부족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시 신규 채용분만 교부된 금액					3,199	8,191 (156.1%)
소방(75%) 교부액	23,165 (2.5%)	21,964	24,850 (13.1%)	32,093 (29.1%)	20,291 (△36.8%)	16,628 (△18.1%)	20,781 (25.0%)
안전(25%) 교부액	6,948 (0.4%)	7,285	8,283 (13.7%)	6,864 (△17.1%)	6,764 (△1.5%)	5,543 (△18.1%)	6,927 (25.0%)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개선 방안

소방회계법의 주요 특징은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토록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특별회계는 크게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혼용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의 인건비 전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정책사업비에 사용할 일반회계 전입의 최소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방정책사업비 확보(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토록 함)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특별회계도 Table 5와 같이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와 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내에서 각기 계정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정책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로 투입되는 불합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Table 5. Main Contents of the 「Seoul Fire Safety Special Account」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21.1.1.字 시행)		
상위법령 위임사항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범위(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계정구분	인건비 계정,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분리		
	계정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인건비	- 지역자원시설세(정책사업비 제외한 금액) - 소방안전교부세(20/100초과금액) - 일반회계전입금 - 보전수입(잉여금)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 정책 사업비	- 지역자원시설세 70%이상 -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한 금액) - 일반회계전입금 - 기타 과태료 등	인건비 세출과목을 제외한 모든 세출
예비비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세부적으로 인건비 계정의 세입은 ①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을 제외한 금액, ②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²⁾, ③일반회계 전입금, ④보전수입(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만 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①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계정 세입을 제외한 금액, ②일반회계 전입금, ③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7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³⁾, ④소방 관련 국고보조금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3. (생략)

의 전입금, ⑤법령 및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⑥법령 및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①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③소방특별회계의 목적과 부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경비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건비와 관련해 인건비 계정의 세출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만을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소방조직 내부에는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소방헬기 조종 및 가스관련 업무 등 소방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일반직, 임기제 등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소방회계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르면, 소방사무란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그 밖에 시장 및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라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인건비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 및 실비변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 이외의 인건비에 대하여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책사업비를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70%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책사업비 내에는 소방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력 이외에도 공무원 등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사업비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을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일치시키는 한편, 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소방회계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2021회계년도 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편성내역을 Table 6에서 보면,, 2020년도 8천 5백만 원 대비 84억 42만 원이 증가된 85억 27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예비비 편성이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5년간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예비비 현황을 살펴보면, 편성액 평균이 6억 97백만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비비의 편성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은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6. Comparison between initial reserve cost budget and final reserve cost bud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평균)
편성액	159	1,385	1,106	328	8,527	11,505 (2,301)
최종예산	1,437	1,027	906	85	3,415	6,870 (1,374)
증감	1,278	△358	△200	△243	△5,112	

결론

기존에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직으로의 전환 요구는 열악한 소방재정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요구와 지역별 편차 없이 동등하게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어 제도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분, 지휘, 복지, 재정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변화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 중에 소방재정과 관련해 소방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 세출 항목을 명확히 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재정 부분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인건비와 관련해, 인건비 계정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만을 한정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소방사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아 이중적 기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2) 정책사업비와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의 70%이상을 투입토록 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순수한 소방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인건비에서 제외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사업비의 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다.
- 3) 예비비와 관련해,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토록 하는 규정에는 부합하나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할 것이며, 과다한 예비비의 편성은 결국 사업비의 축소를 가져오기에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Ahn, Y.-H. (2019). “Policy complementary measures for effectiv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Monthly Public Policy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nomy*, Vol. 168, pp. 52-55.
- [2] Chun, W.-J. (2019). “Examination and resolution of major bills by national assembly committee, such as laws related to fire-fighting and nationalization.” *Monthly Public Policy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nomy*, Vol. 168, pp. 91-94.
- [3] Kim, S.-J. (2020). “Changes in policies and tasks left behind by the conversion of firefighters to national positions.” *SFA journal*, Vol. 35, pp. 3-18.
- [4] Park, C.-S. (2020).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fire service organization operations by nationalization of fire officer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4, No. 6, pp. 114-124.
- [5] Ryu, S.-I., Lee, D.-S. (2015). “An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appropriateness to make fireman national public officials.”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Vol. 11, No. 2, pp. 97-106.
- [6] Song, S.-H. (2016). *Fire Safety, Still Seriou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ssues & Analysis* (227), pp. 1-25.